처분취소청구의 소

소송종류	행정소송	법 원 명	대법원
사건번호	2018두○○○○ [3심]	사건유형	학교폭력
원 고		피 고	○○초등학교장
판결선고일	[3심]2019. 1. 31. 심리불속행기각	비고	[1심]2018. 2. 9. 원고패소 [2심]2018. 10. 2. 원고일부승소
사건개요	피고는 2017.04.19. 원고가 2017.03.03.부터 2017. 04.18.까지 같은 반 학생 11명에 대하여 주먹으로 때리기, 심하게 욕하기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피해학부모들의 신고로 학교폭력사안을 접수하였음. 위 신고에 따라 2017.04.27.~05.02.까지 원고에 대하여 '심리치료'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조치(이하 '제1처분'이라고 함)를 하였음.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.04.26., 2017.05.01. 2회에 걸친 회의에서 원고에게 제17조제1항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(5시간), 제5호 학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치료와 신청자 및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이수 각 4시간 결정을 함. 이에 따라 피고는 2017.05.01. 원고에게 제17조제1항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(5시간), 제5호 학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치료와 신청자 및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이수 각 4시간의 처분(이하 '제2처분'이라고 함)을 하였음.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로 2017.05.07. ○○초등학교로 전출은 갔고소를 제기함		
주 문	1.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 2.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		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	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 한다.		
판결이유	 ○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,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함 ○ <1심> 판결요지 - 피고는 자치위원회에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음을 즉시 보고하여 자치위원회위원 전원의 동의로써 추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, 이 사건 제1처분에 관련한절차적 위법은 존재하지 않음 -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처분을 하고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7항에 따른 통지절차를 취하였다고 할 것임 - 피고는 이 사건 제2처분을 함에 있어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이 정하고있는 바에 따라 자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가해학생인 원고와 그 부모에게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-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원고의 학교폭력 행위 내용, 경과 및 이 사건 각 처분의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여 적응과 배려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입학 직후부터의 행위를 이유로 		

입학한 지 불과 2개월 무렵에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, 이 사건 각 처분에 학교폭력예방법 상의 조치 재량권을 일탈·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

O <2심> 판결요지

- 2017. 3. 15. 개최된 학교설명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의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자치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
- 학교폭력예방법은 자치위원회 선출의 의결정족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,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5항은 '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' 고 규정하고 있는 바, 자치위원회 위원 선출 투표에는 학부모 중 참석인원수가 위 조례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
- 학교폭력예방법, 관련 조례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발간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가이드북 등에 자치위원회 위원 당선자를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, 피고가 이러한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
-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의 긴급조치는 출석정지를 제외하고 긴급조치 처분에 앞서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
-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7항에서 규정한 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이 사건 제1처분은 그 처분 절차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